

인천광역시서해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hae.go.kr>

선

기관의장

람

제2039호

2026. 10. 21.(수)

차 례

공 고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121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-2121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. 10. 21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1. 개정사유

- 협의회 구성 방식을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비상설 기구로 협의회 설치·운영 (안 제3조제1항)
-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 (안 제4조)
- 위원 임기 규정 삭제 (현행 제7조)
- 회의 개최 규정 개정 (안 제8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(참조: 기업일자리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전화 560-0862, 팩스 560-2731, 이메일 flyhighkj@korea.kr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는 경우 안건 발생 시 개최되는 협의회 특성으로 인해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, 협의회 구성 방식을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비상설 기구로 협의회 설치·운영 (안 제3조제1항)
- 나.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 (안 제4조)
- 다. 위원 임기 규정 삭제 (현행 제7조)
- 라. 회의 개최 규정 개정 (안 제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감사실, 가정보육과와 합의
- 라. 기 타: 해당 없음

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비상설 협의회로 둔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제1호”를 “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②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비상설 협의회로 둔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	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
<u>② · ③</u> (생략)	<u>③ · 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<u>④</u>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.	<u>⑤</u> ----- <u>제4항제1호</u> ----- -----.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</u> <u>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본다.</u>	<u><삭 제></u>
<u>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</u> <u>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</u> <u>기간으로 한다.</u>	
<u>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	

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

2.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

3.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8조(회의개최)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~ ⑤ (생략)

제8조(회의개최) ① 위원장은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1. 자치법규명	「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7